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5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약국등광고 금지 및 자율심의제도 신설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광고 등 위법한 표시·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약국등광고 금지 및 광고 자율심의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등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게 금지되는 광고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7조의5 신설).
 - 약국개설자가 개정안에서 금지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등광고를 한 경우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정안에서 금지한 약국등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제8호의6 신설).
- 약국개설자가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의6 신설).
 - 자율심의기구에 약국등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7조의7 및 제92조의2제2호의2 신설).

- 자율심의기구가 약국등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의 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5(약국등광고의 금지 등) ①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약국에 관한 광고(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약국등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등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2.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4.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현행	개정안
	5.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이나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7.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8.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광고 9.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현행	개정안
<신설>	11. 제47조의6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3. 그 밖에 해당 약국등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등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약국등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한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제75조의2, 제76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약국등광고의 심의) ①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약국등광

현행	개정안
	<u>고가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약국등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이 경우 제1호에 따른 단체는 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제2호에 따른 단체는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u> <u>1. 약사회</u> <u>2. 한약사회</u> <u>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u> <u>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약국등광고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약국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u> <u>2. 약국에 소속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u> <u>⑤ 약국등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u> <u>⑥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6</u>

현행	개정안
<신설>	조제1항, 제17조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약국개설자가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약국등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의7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7(약국등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신설> 제75조의2(시정명령) (생략) <신설> <신설>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7. 그 밖에 약사(藥事) 또는 약국등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47조의8(약국등광고 모니터링) 자율 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가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제47조의5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현행	개정안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5. (생략) <u><신설></u> <u>8의6.</u> (생략) 9. ~ 12. (생략) ②·③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u> 3. ~ 6.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① ----- ----- ----- -----. 1. ~ 8의5. (현행과 같음) <u>8의6.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u> <u>8의7. (현행 제8호의6과 같음)</u> 9.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등광고의 금지 및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 및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등광고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¹⁾.
-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에 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47조의5제1항), 약국개설자가 하지 못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며(안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약국개설자가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자율심의위원회의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이는 「의료법」의 입법례²⁾에 따라 광고 관련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고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47조의5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등광고 금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약국등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약국등광고를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등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약국개설자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후기·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약국개설자의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사법」과 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2) 「의료법」의 의료광고 관련 규정은 p.27을 참조.

관한 법률」 3)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 개정안은 약국개설자만 약국등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를 유발하는 광고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수범자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모든 일반 국민으로 하면서 광고의 개념을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으로는 일반 국민의 약국 관련 정보 게시·공유, 언론 보도까지 규율대상에 포함되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위치·영업시간 관련 정보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는 약국 이용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추천·보증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함. 대가의 범위에는 금전 형태 뿐만 아니라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대여받은 경우,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공동구매 주선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받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약국등광고를 약국개설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사전에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약국개설자 외에 약국 또는 약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 관련 정보 제공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약국개설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7조의5제2항: 금지되는 약국등광고 유형 규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하지 못하는 광고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⁴⁾.

4)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 현행법령 및 개정안의 광고 금지 유형 비교 >

현 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각목)	개정안 (안 제47조의5제2항 각호)
-	1.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3.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현 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각목)	개정안 (안 제47조의5제2항 각호)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4.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5.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6.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이나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7.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8.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9.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11. 제47조의6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2. “참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13. 그 밖에 해당 약국등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의 유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안 제47조의5제2항제1호는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약사에 관한 법령’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광고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법령 위반까지 문언상 포섭될 소지가 있고, 하위규정에 의해 ‘윤리 기준’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어 금지되는 광고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의 체계는 약국개설자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 유형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계인바, 수범자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금지 광고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둘째, 안 제47조의5제2항제10호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 및 세부 판단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법」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으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⁵⁾, 동법 시행령이 금지의 기준을 구체적

5)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으로 정하고 있음⁶⁾.

- 셋째, 안 제47조의5제2항제11호는 “제47조의6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여 자율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안 제47조의6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약국등광고에 대하여만 자율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7조의5제1항은 ‘약국등광고’를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국등광고는 매체와 관계없이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일체를 의미함.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하지 못하는 광고 중 하나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넷째, 안 제47조의5제2항제12호는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6)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남용 우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 해석에 따라 규율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⁷⁾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안 제47조의5제2항제12호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창고”, “공장” 등 특정 용어를 약국등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경쟁을 위한 차별화 요소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47조의5제2항제13호는 “그 밖에 해당 약국등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1.28. ~ 2026.1.7. 입법예고)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금지 광고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의 체계가 소위 네거티브 규제로서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인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금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13호에서 하위법령이 포괄적으로 금지 광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법」이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나⁸⁾, 동법 시행령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 제47조의6부터 제47조의8까지: 자율심의제도 신설) 개정안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약국등 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을 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8)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회·한약사회 및 소비자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가 약국등광고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의료법」의 입법례에 따라 약국등광고에 대하여도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 광고를 근절하고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되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의 체계와 비교할 때,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 광고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⁹⁾.

따라서, 사전심의를 필요한 수준으로 약국 광고 시장에서 위법·부당 광고가 확산되어 있는지, 현행 사후규제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보건복지부는 광고의 주체가 법인 개설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병·의원과 달리 현행 약사법상 약국은 자연인인 개인이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규모나 광고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일선 약국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자율심의에는 약 15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실질적 약국 현장에 맞는 약국 광고 심의대상과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 광고 금지사항을 법률로 상향화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약국 광고 금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에 공감함.

-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 및 의료인 등에 대한 광고의 일반적 금지원칙과 심의제도 및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약국 등에 대한 광고 관리 체계를 약사법상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음.

- 다만, 광고의 주체가 법인 개설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병·의원과 달리 현행 약사법상 약국은 자연인인 개인이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규모나 광고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일선 약국에서도 과도한 규제에 인식할 우려 등이 있어 실질적 약국 현장에 맞는 약국 광고 심의대상과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광고) 지하철·버스 옥외광고물, 영화관 영상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기관 내 소책자 등에 심의를 받은 광고 포스터 및 영상물 등을 게시

(실질적 약국 광고) 대다수 약국 개설자 등의 개인이 제작·부착하는 지면 표시·광고물로 의약품 등 판매 품목 가격 할인 또는 특정 증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 판매 품목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약국등광고를 약국개설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사전에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에 해당 내용을 신설할 실익은 없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이 “창고”, “공장” 등 특정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경쟁을 위한 차별화 요소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약사회) 특정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함.

다만, 약사들이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복약 방법 및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적 정보 제공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부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한약사회)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약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국과 약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7조의5제1항은 약국과 약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안 제47조의5제2항제13호는 금지 광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의료법」의 광고 관련 규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자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자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